

● 전국도서관대회 제3주제발표

“圖書館政策” 이대로 좋은가

—圖書館的 環境을 中心으로—

李 景 求

〈國史編纂委員會 司書官〉

序 論

“도서관은 그 기능의 발휘 장소인 社會環境의 성격과 변화에 따라 形成되고 影響받으며 社會變化에 부응할 義務를 가진 社會的 道具”라고 말한 shera의 말이나 “도서관은 社會的 裝置이다”¹⁾라는 표현으로 도서관을 社會經營의 한 裝置로 이해한 Butler의 말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社會的 道具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社會的 機能의 多邊化, 文化의 廣域化, 時間的·空間的 概念의 變化, 科學의 發達 등과 같은 특징은 必然的으로 知識壽命의 短命化와 研究的 機能의 強化 現象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情報의 探索機能을 發揮키 위한 全人教育은 時代的 要請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世界의 모든 나라들이 正規教育인 學校教育 이상으로 非定規的인 社會教育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몇백년의 民主主義 歷史를 갖고 있는 歐美 諸國이 市民社會의 要請에 의한 政策形成이라는 上向的 構造로 社會發展이 이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民主主義 歷史가 짧은 後進國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後發經濟國에서의 政策形成은 예외없이 強力한 리더쉽에 기초한 下向的 構造를 갖게 되기 마련이고 이를 통해서 社會的 經濟的 發展이 이룩되고 있는

것이다.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노력에 의한 결실이었고 이를 가능케 하는 人力開發차원의 學校教育도 팔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生存權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文化的인 측면과 비정규적 教育의 측면은 相對的 취약성을 느끼게 하는 不作用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도 平生教育과 文化暢達의 대표적 장치라는 도서관의 發展은 거의 눈에 띌만한 것이 없다. 흔히 도서관계에서 도서관발전의 부진 요인으로 경제제일주의적 사회현상과 정책의 부재현상으로 돌리고 있음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과거 40여년 동안 도서관계가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주장하는 것도 바로 상기와 같은 사회적, 정책적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년전 부터 일기 시작한 사회환경적변화로 도서관계는 바로 이 시점을 도서관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으려 한다.

경제만능의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의 개발과 축적이 국내외 과학정보의 탐색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종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점이라든가, 상대적 후진성을 탈피 못했던 平生教育과 文化暢達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경제사회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동안 공부방으로만 인식되던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치라는 인식이 정책당국을 비롯한 사회 각 계층에 확산되었다는 점 등이 바

1)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33, p.118.

로 그것이다.

본 줄고에서는 이 논제인 “도서관정책, 이대로 좋은가?”의 “이대로”가 시사해 주는 현황분석 부분은 이미 여러각도로 알려져 있어 가능한 한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도서관정책을 세움에 있어 고려될 여러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나열하고자 한다.

(1) 圖書館政策에 관한 論議

전술한 바 대로 과거 40여 년간 우리의 도서관계는 도서관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987년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현상이 한층 심화된 인상을 주고 있다.

1986년 도서관계는 도서관발전방안을 수립, 정부·여당에 건의한 바 있으며 당시의 건의내용의 핵심사항은 ① 정책담당부서의 설치 ② 도서관법의 개정 ③ 국립중앙도서관기능의 강화, 이 세가지로 집약된다. 그 결과 우선 도서관법 개정은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중요사업의 하나로 채택하여 議員立法으로 개정이 추진되는 등, 그밖의 여러가지 발전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 도서관법 개정 ② 도서관행정전담부서의 설치 ③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 ④ 도서관시설의 확충 ⑤ 도서관장서의 확충 ⑥ 운영의 내실화 ⑦ 도서관 상호협력체제의 구축 ⑧ 재정지원의 확대 등이다. 또한 장단기 실천사항으로 ① 도서관법개정 ② 도서관행정 전담부서 설치 ③ 국가대표도서관의 체제개선 ④ 독서지도의 교육과정화 ⑤ 이동도서관 운영의 확대 등이 채택된 바 있다.²⁾

上記한 여러가지 방안은 法改正을 제외하고는 거의 政府當局의 組織과 豫算에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려웠다. 다만 1987년 10월에 개정 공포된 도서관법이 여러가지 발전방안을

수용할 만한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으로 마련되었다는 점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뿐이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칠 법령사항을 소개하면 教育法(79조1항) 학교설비기준령(별표 3) 대학설치기준령(제12조) 서울대학교설치령(제17조) 국립학교설치령(제13조) 조세감면규제법(제49조) 공무원임용령(제3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 등과 하위법령인 해당 규칙과 조례등이다.

생각컨대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은 UNISIST가 제시하고 있는 計劃要素³⁾인 ① 정보정책기구설치 ② 정보처리기관의 협력망 구축 ③ 컴퓨터 기법에 의한 Data Base 편성 ④ 표준화 ⑤ 정보기관의 육성 ⑥ 자료의 등록제도 ⑦ 전문단체의 역할 등과 NATIS가 제시하는 計劃要素⁴⁾인 ① 公式的 정책기구 설치 ② 협력망 조직 ③ 납본제도의 확립 ④ 정보기관의 육성 ⑤ 컴퓨터기법의 도입과 활용 ⑥ 통신네트워크의 활용 ⑦ 표준화 ⑧ 정보처리요원의 자격 ⑨ 교육제도 등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계가 염원하는 것은 정책상의 화려한 제목이나 미사여구 보다는 작은 문제라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천력에 있는 것이다.

(2) 圖書館政策機構에 대한 研究

우리나라 憲法第31條⁵⁾항으로 규정한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平生教育과 文化暢達의 代表的 장치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여타의 기관들이 國家의 政策的 차원에서 育成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항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始源的이고 원칙적인 의사표시에 그쳐 있을 뿐 具體的이고 명백한 政策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에 비해 中國은 憲法第22條를 통해 “국가는 人民을 위해 종사하며 社會主義를 위

2) 未刊인 「民主主義黨 國策研究所」 圖書館發展方案에서 발췌한 것임.

3) UNISIST, study report on the feasibility study on a world scientific information system, by UNESCO and ICSU, Paris, UNESCO, 1971, p.161.

4) NATIS; Natinal information policy; why is an information policy necessary, paris, UNESCO, 1976, PP.1-4.

하여 奉仕하는 文學·學藝事業·圖書館·博物館·文化館 기타 文化事業을 發展시키며 대중적 문화활동을 전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비록 도서관이 社會主義 宣傳과 人民 啓導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하더라도 圖書館이 憲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해서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가사업의 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서관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국 탄탄한 제도적 장치의 바탕위에 성립되어진다는 점이 명백한 사실이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기구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몇나라의 도서관 정책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코자 한다.

〈美國〉 미국의 도서관정책은 1948년 공공도서관봉사를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1956년 “도서관봉사법(Library Service Act)”제정과 1964년 “도서관봉사 및 건축법(Library Service & Construction Act)”제정으로 현재의 모습과 같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教育部와 법률에 의해 위임되고 관리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도서관및정보과학국가위원회」가 정책담당부서의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조직의 편성과 운영방법, 예산한도액, 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도서관및정보과학국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성된 것은 정보자원의 효율화가 국가경영에 있어 절대적 정책과제임을 인식한 결과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위원회」가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인 것에 비해서는 도서관을 보는 정책적 시각의 차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英國〉 영국에 있어서의 도서관정책은 1964년 제정된 “公共圖書館·博物館法”으로 국가시책화된다. 이 법은 도서관 정책기구의 설치를 강제규정하고 稅制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교육과학부」가 도서관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수상 산하의 「도서관자문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들이 「교육

과학부」에 파견되어 공무원과 자문위원의 결합형식인 독특한 형식을 취하여 중·소공공도서관의 개편을 통한 대단위 도서관협력망을 편성하고, 제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충당케 하는 한편 특히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도서관설치비용으로 사용케 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시사할 만한 점은 교육과학부 주요임무가 ① 학교교육, 청소년·사회교육 ② 도서관전반을 정책의 순서로 열거되어 있는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國〉 1978년 제5기 전인대회에서 화국봉의 “각종 유형의 도서관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가 광범위한 대중에게 봉사하는 도서관망을 조직 확대하며...”라는 말을 통해 중국의 정책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 「국무원과학계획위원회 도서관소위원회」→분야별·지역별중앙도서관으로 구성되는 「중앙도서관위원회」→9개지역단위 「중앙도서관위원회」로 연결되는 조직체제를 통해 정책을 시험하고 있으며,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재정부」 「건설부」등에서 도서관제정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1981년 이후 사서직이 대학교수, 회계사, 경제간부, 편집자 등과 같이 5개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1945년 불과 391개였던 도서관이 1980년대에 30만개로 비약적 확장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덴마크〉 덴마크의 도서관정책체제는 지도기관으로 중앙정부(문화부소속의 공공도서관지도국)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소속의 문화위원회), 도서관봉사센터 및 대·중·소규모 공공도서관 자체의 3조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문화부 내의 「도서관과」는 감사기구의 성격이고 외청인 「공공도서관지도국」이 요청하는 예산이나 정책의 조정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지도국」은 기금배정이나 재정지원,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각종제도를 연구하는 집행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諸國 공통적 기구인 「도서관봉사센터」는 판권 합작형식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중앙정리방식을 통해 각급도서관의 업무를 절감시켜 주고 있다. 지방회의 소속의

5) 참고로 ③ 건강·건축 ④ 교원양성, 연수……등이 있다.

「문화위원회」는 그 지역의 교육·문화·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各道에 도립도서관(County Library)을 두어 법에 의해 지역별 중앙도서관 기능을 담당케 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내의 학교도서관과 일부의 대학도서관을 지도 육성하는 책임을 도서관법에 의해 부여받아 예산이나 정리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행정조직간의 경직성이 거의 없이 상호의존적 협동으로 전체 도서관계를 지도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국의 도서관정책기구를 살펴 본 바 그 어느 나라나 도서관육성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의 경우를 우리의 실정에서 他山之石으로 삼아 도서관정책을 펴나가야 될 줄로 믿는다.

(3) 圖書館 環境에 대한 研究

도서관은 조직상 다른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또한 時代의 변천에 따라 업무의 내용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도서관의 조직은 과거의 자료지향적관리(Material Orientation Management)에서 이용자지향적관리(Client Orientation Management)로 변화되어 사서의 입장은 업무상의 문제나, 경영에의 참여 등에 있어 다른 조직과 달라 자신을 위한것이 아니고 이용자를 위한 것”⁶⁾이고 도서관업무에 있어서의 경영상의 맥점은 ① 도서관이 설정한 목표 달성 ② 자료의 효과적 이용 ③ 사서의 직무 만족 ④ 이용자의 만족⁷⁾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봉사를 제1의 철학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도서관업무의 성격상 사서의 입장은 대민봉사에 따른 스트레스가 그 어느 직종보다 강하다. 더욱이 업무 내용이 증명서 발급이나 서류 열람과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참고업무를 포함한 자료안내이거나 복잡한 자료조직 상태를 이해시키는

이용 안내와 같은 것들이어서 스트레스의 농도는 한층 더 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여타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을 보는 사회적 시각과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대로 中國이 1980년대에 이르러 사서직이 5대 전문직종의 하나로 부각된 것은 바로 국가의 정책이 도서관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는 사서가 누릴 수 있는 몇가지 반대급부를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문직에 의한 도서관 운영이다. 현행 도서관법 第23條1項에 의하면 “공공도서관관장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법 개정 당시 사서직만으로 건의된 사항이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복수화된 조항이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요청되는 도서관사회에서 전반적인 도서관운영을 담당할 관장의 자격이 복수화된 것은 당시의 현실적 여건이 고려된 것이 분명하다. 전문성을 지향하는 사회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은 단지 시간문제인 것 처럼 보인다. 다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가에 따라 도서관에 있어서의 사서의 입지는 결정될 것이다. 공립의 공공도서관장의 자격이 확고히 결정되고서만이 다른 종류의 도서관에서의 사서직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둘째는 근무환경의 개선이다. 근무환경의 개선은 인사문제(임용, 전보, 승진...)와 근무부담, 그리고 보수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도서관에 있어서의 인사문제는 자못 심각한 형편에 도달되어 있다. 상위직급이 타직종에 의해 점유—이점 대학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되어 있는 탓도 있겠으나 근본적 문제는 도서관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 최근들

6) Nicholas C. Burckel, “Participatory management in Academy Libraries; A Review” College & Research Libraries, January 1984, p.32.

7) Rosemary Ruhig du Mont, “A Conceptual Basis for Library Effectivenes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March, 1980. p.103.

어 도서관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人口 20萬명에 하나의 공공도서관이 있을 뿐이다. 30여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적체는 말할 것도 없고 현직자의 전보, 승진적체의 문제도 심각하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관계,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상위직급의 수적 열세등도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도서관수의 대폭적 증설정책이 필요한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에 포함된 사서직종을 연구직과 같은 전문직종으로 바꾸어 인사상의 융통성을 터 놓아야 할 것이다.

인사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과중한 근무 부담에 있다. 과학적경영기법을 동원한 적정인원의 산출은 물론이거니와 도서관법시행령에 규정된 직원배치기준만이라도 충족시켜야 된다.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과중한 시간외근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장학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産學協同이라는 차원으로 실마리를 풀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서직원의 보수에 대한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서 스스로의 자기향상과도 관련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1982년에 책정된 월 2~3萬원의 사서수당이 아직도 그대로인 점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점은 전문직에로의 변형을 주장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는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이다. 개정된 도서관법이 사서자격 취득요건으로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으로 상향조정된 교육정책도 있었거니와, 현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것은 대학교육과정의 취약성과 재교육정책의 미비에 있다. 도서관 현장에 알맞는 人力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상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國家考試制 문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재교육기관은 유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서직 공무원중 문교부소속공무원만 대상으로 일반교과목을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덴마크의 경우 「공공도서관지도국」 소속의 「왕립도서관학교」와 같

은 재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곳은 전국의 공사립을 막론한 모든 도서관직원을 상대로 주제별, 이용자계층별, 직무분야별로 각종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기왕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재교육과정을 확대, 본격적인 「사서연수원」을 설치운영케 함으로써 모든 도서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의 다양한 지식·정보의 처리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다. 그동안 우리의 도서관은 빈약한 장서, 폐쇄적 봉사활동, 공부방화한 독서실이라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쳐져 왔다. 때문에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충족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참신한 자료 수집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 각종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할 행정기관끼리의 긴밀한 유대만이 그러한 현상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서들 스스로의 봉사 자세를 소극적이고 폐쇄적 사고에서 적극적·개방적 사고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開架制·貸出制의 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移動圖書館과 같이 자료를 들고 이용자를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지역내 각종 도서관끼리의 협력이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축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에 따라 中央館인 國立中央圖書館은 1989년초에 各市·道의 公共圖書館中 하나를 地域代表館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눈에 띠 만한 성과가 없다. 公共圖書館과 大學 및 學校圖書館, 公共圖書館과 專門·特殊圖書館과의 관계는 行政組織間的 경직성이 잔존하는 한 앞으로는 쉽게 연결될 것 같지 않다. 덴마크에서와 같이 公共圖書館이 地域內 圖書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電算化된 정보유통의 全國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圖書館間 地域間 不均衡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대표관 운영도 情報의 흐름과 行政의 흐름의 두가지 측면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結 論

도서관은 人間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도서관 정책이 民生問題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國家政策을 社會福祉 증진에 치중한다고 闡明한 이상 도서관정책도 이제는 뒷전으로 돌릴 명분이 없

다. 이러한 시점에서 前述한 몇가지 문제는 政策 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될 사항으로 믿는다. 강력한 정책담당부서의 구성, 도서관 현장의 체질 개선,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서 스스로의 자세도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 태도로, 소극적인 안주보다는 적극적 참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圖書館法, 同法 施行令
- 韓聖澤, 韓國圖書館政策의 計劃要素에 關한 研究, 漢陽大學校, 1984, 碩士論文.
- 國會圖書館, “大英圖書館法” 國會圖書館報, 1973.10, pp.43-50.
- 國會圖書館, “덴마크 公共圖書館法”, 國會圖書館報, 1966.10, pp.23-29.
- 朴大權, 圖書館法改正方向; 改正案을 中心으로, 出版文化, 1987.4, pp.7-9.
- 吳東禹, 우리나라 圖書館政策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國會圖書館報, 1988.4, pp.5-16.
- 柳寅錫, 圖書館業務의 組織스트레스와 豫防管理에 關한 研究, 도서관, 1986.10, pp.31-46.
- 李鎮相, 中共의 圖書館政策과 制度에 關한 考察, 國會圖書館報, 1986.4, pp.31-42.
- 韓國圖書館協會, 도서관행정부서: 도서관, 정보과, 圖協會報, 1987.4, pp.2-5.
- 한순경, 英國의 圖書館政策, 國會圖書館報, 1978.6, pp.17-24.
- 玄圭燮, 英·美國의 圖書館政策機構와 組織類型에 關한 考察, 도서관, 1987.12, pp.5-19.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 1. 전화신청가능
-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 회원 1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 회원 2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 회원 3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군읍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부회비 2,000원 포함)
개인 회원	10,000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자격증(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사서교사)을 소지한 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